

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쳐게 됨에 따라,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높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□ 구미산업단지 확장단지조성사업

- 옥계동 14필지 47,483.6㎡ → 산동면 신당리에 편입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산동면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른 「구미시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

2)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읍면동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 따른 구미시 읍면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읍·면·동”을 “읍면동”으로, “구역은[별표]”을 “구역은 별표”로 한다.

별표 중 산동면란과 옥계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면동의 명칭	관 할 구 역
산동면	산동면 일원 종래의 옥계동 1014, 1015, 1016, 1017, 1018, 1019, 1020, 1310, 468-1, 468-5, 469, 470-1, 471, 산53-1을 신당리에 편입
옥계동	옥계동 일원 종래의 옥계동 중 산동면 신당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

부 칙

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1차지역 부분준공 인가
공고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4조의2에 따른 <u>구미시읍면동</u> ----- ----- --.
제2조(명칭과 구역) 구미시 <u>읍·면·동</u> 의 명칭과 그 <u>구역은</u> [<u>별표</u>]와 같다.	제2조(명칭과 구역) ----- <u>읍면동</u> ----- <u>구역은</u> <u>별표</u>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박 주 영
	담 당 자	임 정 희 (480-6767)